
자료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이 권력남용과 행사 방해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2011경기조정62 · 63
 청구명: 정정 · 손배
 신청인: 김OO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기신문
 중재부: 경기중재부
 접수일: 2011.07.11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안양시에 서 열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상식도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안양시 수영연합회가 시청 소속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 방해, 공금 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파악에 나섰고, 안양지역 수영 선수의 부모들이 신청인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보도내용 중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연합회로부터 금액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고, 감독직을 이용해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감독을 사퇴시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조정대상보도 중 6월 28일자 보도에는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었고, 6월 30일자 보도는 안양시수영연합회의 입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이 보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경기신문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제하의 기사 및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제하의 기사(각 2011년 6월 28일자, 30일자 23면)

내용 1: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최근 열린 안양시에서 열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상식도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 안양시수영연합회가 시청 소속 수영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 방해, 공금 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35개팀 484명이 출전한 가운데 안양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안양시수영연합회 허모 전무이사와 안양시청 소속 김모 수영감독의 갈등으로 폐회식도 열리지 않은 채 막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날 입상자들이 행사가 끝난 뒤 상장과 메달을 전달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연합회 측은 이같은 일이 김모 감독의 권력남용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안양시에 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 감독이 자신의 제자에게 최우수상을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내고, 진행요원 9명 중 자신이 데려왔던 5명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대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또 “김 감독이 지난 2009년 수영대회 때는 심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부 지급하지도 않고, 2008년 대회 때도 타 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김 감독 과다 사용된 비용 2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다”며 “특히 김 감독은 지난 1997년부터 시청 수영감독 직을 이용해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 등에 각종 압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대회진행 과정에서 연합회 허모 전무가 심판과 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제자 3명과 자녀 2명을 돌려보냈지만 대체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대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며 “또 특정팀에 상을 주자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에서 지적한 예산문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예산은 당시 사무장이 연합회 측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또한 대회가 끝난 뒤 카드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연합회 측의 투서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진위파악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용 2 :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안양시청수영부 감독 때문에 제1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일자 23면) 안양지역 수영 선수의 부모들이 시청 수영감독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안양시가 이미 3개월 전에 수영감독의 자질문제를 거론한 각종 민원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징계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29일 안양시와 안양시수영연합회 등에 따르면 안양지역 일부 수영선수의 부모들은 시청 수영부 김모 감독이 감독직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선수 부모들에게 돈을 빌린 뒤 늦게 갚는가 하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김 감독이 수년전부터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김 감독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안양지역 학교 출신 선수들이 타 지역 운동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수영을 하는 자녀에게 해를 끼칠까봐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지난 3월 말 김 감독과 관련된 각종 진정서를 접수받아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징계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감사실은 지난 4월 말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관계, 수영장 이용시설비 미지급’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 교육체육과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감독직을 계속 맡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김 감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임여부나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3개월 전 문제가 제

기된 부분도 추가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감독은 본지 보도 이후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가. 제목: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지 2011년 6월 28일자 23면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6월 30일자 23면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각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청 수영감독에 대해 안양시수영연합회가 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방해, 공금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김 감독이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안양시 대회와 타시도 대회의 예산이 두 가지로 집행된 것으로서 예산과다 사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합회로부터 200만원의 반환요청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판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김 감독이 이 돈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수영입과 관련, 김 감독은 영입할 선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시도로부터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독직을 이용하여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6월 30일자 보도에서 ‘김 감독이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안양시 감사실이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 관계, 수영장 이용시설 미지급’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 결과, 김 감독의 자녀가 제주도 한라배 수영대회 당시 어깨에 강한 통증이 있음에도 단체경기까지 모두 참가하고 서울에 올라와 병원에서 양쪽어깨에 핀을 3개나 박고 수술을 하였으며 극심한 재활 활동을 안양과 서울을 오가며하면서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자녀 학교의 수영감독이 스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 감독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전국대회 등 수상을 할 정도로 선수들을 적극 훈련시킨 사실이 있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감사실의 감사 내용은 김 감독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영장 시설비 미지급 보도 내용도 자녀에 대해 수영장 일일 사용권을 사용하다가 정기권으로 교체한 것이지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신문 인터넷 메인화면에 아래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론’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지 2011년 6월 28일자 23면 “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 및 6월 30일자 23면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청 수영감독에 대해 안양시수영연합회가 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방해, 공금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고 보도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 김 감독은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연합회로부터 200만원의 반환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수영대회 심판비용 지급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선수영입과 관련하여 영입할 선수가 없어 타시도로부터 선수를 영입한 사실이 있을 뿐 감독직을 이용하여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6월 30일자 보도에서 ‘김 감독이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과 안양시 감사실이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 관계, 수영장 이용시설 미지급’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자녀학교의 수영감독 사퇴부분도 민원제기 및 취하 과정에서 수영감독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김 감독이 사퇴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등 수상을 할 정도로 선수들을 적극 훈련시킨 사실이 있을 뿐 훈련을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안양시 감사실이나 시체육교육과 차원에서 감사결과를 확정된 후 김 감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되, 제목은 2011년 6월 28일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할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신문 인터넷 메인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11년 7월 21일 09:00부터 7월 22일 09:00까지 1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2011년 6월 30일자 조정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시되도록 한다.

단독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제주조정44 · 45

청 구 명 : 정정 · 손해

신 청 인 : 김OO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07.0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 사라봉을 지나는 올레길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사라봉 인근의 한 폐가가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1978년 건축된 문제의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심지어 마을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던 집이라 주인이 손을 놓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으며, 특히 주민들은 해당 폐가가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에 언급된 주택은 본인의 소유로, 현재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바로 옆집에 신청인이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보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의 주택이 폐가라는 이미지가 조장됨으로써 주택의 재산상 가치가 절하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은 보도된 올레길 근처에 건물이

많지 않아 충분히 자신의 주택임이 특정되었으며, 신청인의 허락 없이 기자가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고, 정정보도와 상징적 수준의 손해 배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제주도민일보『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제하의 기사(2011년 4월 22일자 사회면)

내용 : 사라봉 인근의 한 폐가가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오는 23일 사라봉을 지나는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는 한편 폐가가 흑여 올레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제가 된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78년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었다. 집은 이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랜 듯 외벽 천정에 커다란 구멍이 나고 화단이 갈라져 있는 등 낡고 허름했다. 현관문 너머 내부를 살펴봐 커커이 쌓인 집기들과 그위로 먼지와 거미줄이 보였다. 벽시계와 거울은 2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오래된 것들이었다.

주민들은 “집은 있는데 사람만 없다”며 십수년째 세를 주지도, 집을 팔지도 않는 주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던 집이라 주인이 손을 놓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음에도 현관문이 잠기거나 열린 때가 있어 주민들은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소수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유주와의 조율을 통해 폐가를 오히려 색다른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안도 거론되고 있었다. 어쨌든 주민들은 행정에 민원을 넣어 해결책을 찾겠다는 궁리다. 건

입동은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행정이 사유재산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소유주와 접촉해 주민들의 우려를 일단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의 집은 230여㎡의 대지에 연면적 210㎡로 지어진 2층 주택으로 지난 1978년 건축됐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주도민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가. 제목: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사회면에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라는 제하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비행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한 폐가가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사라봉 주민들 걱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 건물은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층에는 현재 2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지는 지난 4월22일자 사회면 ‘소문 무

성한 폐가, 어찌지?’ 제하의 기사에서 사라봉에 위치한 폐가가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올레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건물 2층에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인 또한 지속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기사로 인해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제주도민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위 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7월 22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721·722
청 구 명 : 정정·손배
신 청 인 : 이OO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06.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증명서를 내주는 등 외국동포 직업교육제가 외국인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전문학교는 보도 내용처럼 수강료만 받고 교육증명서를 내어준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명시된 서울 차이나타운 내 IT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은 신청인 전문학교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특정되고, 해당 사진으로 인해 관련기관 및 인근 주민, 학생들이 신청인 전문학원을 유추할 수 있기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내용과 관계가 불분명한 신청인 전문학교의 광고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모자이크 처리 및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만큼, 추가적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경제닷컴 『외국동포 직업교육 불법취업수단으로』 제하의 기사(2011년 6월 16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내 용 : 서울 차이나타운 내, 'IT직업전문학교'라는 새 간판이 큼직하게 붙어있는 한 낡은 건물 안 사무실. 16일 오후 이곳에서는 30대 중반의 중국 교포가 붉은 색 여권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학원 관계자와 상담 중이었다. 잠시 대화가 오간 뒤 중국 교포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고 학원 관계자는 평소 거래가 있는 다른 사무실로 전화해 숙소 등을 알아봤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 교포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직업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일

할 수 있는 외국 교포를 30만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취업 희망자가 많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 추가로 기술교육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외국 교포가 일단 입국한 뒤 9개월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최소 3개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일대 학원 강의실 중에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원칙상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격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전일제 취업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은 수강료만 챙기고 기술교육 증명서를 내줘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준다"고 말했다. 학원이 탈법을 조장하는 셈이다.

외국 교포 수강생들은 매달 25만~30만원의 학원비 외에 숙식비 등으로 최소 100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학원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꺼린다. 외국 교포들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배경이다.

학원도 수강료를 벌겠다는 생각에 수강생 모집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537개의 교육기관이 외국 교포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 '중급'이상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만여 명의 중국 교포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고, 이미 2800여명의 외국 교포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수료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문을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육과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경제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가. 제목: "외국동포 직업교육 불법취업수단으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1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수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등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주고, 탈법을 조장한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IT직업 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학교는 보도내용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사회면에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수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등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주고, 탈법을 조장한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IT직업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보도내용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7월 13일 이내에 한국경제의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2, 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700

청 구 명 : 정정

신 청 인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06.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를 인용, 일부 업체는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노동자들에게 최소 20%에서 6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는 ‘월회비’ 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 건설 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 협회인 신청인 단체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유료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 따라 법정 소개료 및 월회비를 준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 ‘월회비’ 를 받는 것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60%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심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제하의 기사(2011년 6월 9일자 뉴스사회면)

내용 : (전략) 일부 노동자들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떼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수수료를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는 지난 1993년 1천980개, 고용 인구 2만 명이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8천600개, 28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경

우 허가된 소개업체는 2009년 기준 43곳, 파견 업체는 경기지역 전체 347곳(2008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업장내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다.

파견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구직자들에게 고용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노동자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 김 모(28)씨의 경우, 일당 6만5천 원 중 직업 소개소와 현장 팀장이 각각 수수료를 챙겨 월급 190만 원 중 110만 원만 받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은 수수료 대신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3만5천 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간병인의 경우는 6만 원에서 6만5천 원의 회비를 낸다. 간병인 박 모(61)씨는 "몸이 아파서 6개월을 쉬었는데 소개소에서 밀린 회비를 내라고 했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가면 소개소에서 회비 안 내고 간 사람이라고 미리 연락해 일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직업 소개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4%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근로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상위 25%의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자율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46) 위원장은 "대다수는 수수료가 23%지만 40%까지 떼는 업주들도 있다"며 "업주들이 기사들 목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고 있는 격"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강남 봉은사와 여의도 등지에서 퀵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명 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업체들의 횡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 홈페이지 뉴스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가. 제목 :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구직]이라는 목마름 ①]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 ·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홈페이지는 지난 6월9일 홈페이지 기사에 “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①“7일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노동자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 김 모(28)씨의 경우, 일당 6만5천 원 중 직업소개소와 현장 팀장이 각각 수수료를 챙겨 월급 190만 원 중 110만 원만 받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고시 제2010-8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구인자로 부터 임금의 10%를 넘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구직자로 부터 소개요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구인자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에도 20%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없었음에도 최소 20%이상 받는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②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은 수수료 대신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3만5천 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간병인의 경우는 6만 원에서 6만5천 원의 회비를 낸다.”는 기사로 마치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2010-8호”에 따르면, ‘월회비’를 받는 부분은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료직업소개소는 법정 소개료를 준수하고 있으며, 월 6만원의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의 소개요금을 합한 금액임을 명시하여 드립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 건설 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는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노동부 고시 제2010-8호에 따라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 ‘월회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소

속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법정 소개료 및 월회비를 준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2011년 7월 15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한다. 이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위 보도문 내용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658·659

청구명: 정정·손배

신청인: 허OO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인규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1.06.08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결혼의 달인 5월에 알뜰한 결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단돈 20만원이면 결혼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에서 신청인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사진을 3초 동안 방송하였다. 이 사진은

신청인의 헤어 메이크업을 해준 헤어디자이너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 사진을 검색, 워딩업체의 홍보성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인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실제 1,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결혼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저렴한 비용의 결혼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중요한 사진이 잘못 이용되어 신청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알뜰 결혼 대작전』 제하의 보도(2011년 5월 11일자 뉴스타임)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가. 제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사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

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써,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정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이 결혼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사진을 약 3초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초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공개된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되는 것을 신청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점, 평범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결혼식을 했다고 오인 받거나 진실과 다른 거짓 방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진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공중파로서 사회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일단 방영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인 점, 외주 제작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9월 2일, 농림수산물부가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하자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폐소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고, 이로 인해 촛불시위가 확산된 바 있다.

정정·반론 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된 주요사안은 총 7가지로 ①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크다, ②아레스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상 5가지 SRM이 수입된다, ④한국인은 유전적 특성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이다, ⑤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⑥ 특정위험물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 ⑦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이다. 2심 재판부는 정정·반론 청구의 7가지 사안 중에서 ⑤와 ⑦ 2가지를 모두 허위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정정·반론 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일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⑤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며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사실의 적시보다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⑦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 건 : 2009다52649 정정, 반론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시 중앙동 1

대표자 서규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강현, 김필용, 송진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경영센터

대표이사 김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

8059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9. 2.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별지 4. 기재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 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도입 초기에서 미국 일부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패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라고 보도한 다음, 특정 유전자형인 엠엠(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④보도를 하고 난 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원고가 주도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제④ 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원고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④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의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의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그 보도과정에서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

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영국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경우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 사건 제④보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환자 중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결과에서도 엠엠(MM)형뿐만 아니라 엠비(MV)형, 브이브이(VV)형 유전자 보유 쥐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병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

고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 적절히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야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를, 2008. 5. 1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라는 제목의 보도를, 다시 2008. 7. 15.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

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② 2008. 7. 15.자 보도에서 피고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이하 ‘이 사건 후속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③ 한편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번역상 오류 부분 및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정정 및 사과하는 부분, 2008. 4. 29. 방영된 피디수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이지를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위하여 마련했다면서 보도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 이후 2008. 4. 29.자 피디수첩의 보도 중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관이킨 보도,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반박하거나, 검찰수사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 부분, 방송 끝 부분에서 송일준 프로듀서(이하 ‘PD’라고 한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후속보도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저희 피디수첩에게 번역을 꼭 바로 해라. 좀 더 흠 없는 방송을 만들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반면 2008. 4. 29.자 방영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등의 취재화면이나

‘광우병과 인간유전자의 관계’ 등에 대한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후속보도를 살펴 보면, 먼저 보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후속보도는 방송의 위치에 있어서 변역상의 오류들 및 진행상의 말실수 등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한 앞부분과는 구별되게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 취지는 2008. 4. 29.자 보도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제④보도는 취재화면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후속보도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속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속보도의 앞부분, 즉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면 원심이 명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보도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속보도에서 연이어 ‘이 사건 제④보도의 전체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는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후속보도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후속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한다) 및 별지 7. 기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적 주장과의 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

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⑤보도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23조, 제24조와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원용이 허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하 'GATT' 라고 한다) 제20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우리 정부는 검역검사 과정에서 로트에서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

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6.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08. 4. 18. 개정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개정되었고, 이 사건 제⑤보도는 위와 같이 변경된 수입제한 규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종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보도한 다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제⑤보도 이후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서한교환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008. 6. 2.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관한 협정' (이하 'WTO SPS 협정' 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가능하였던 것임에도 이 사건 제⑤보도가 있자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과의 서한교환 등의 절차

를 거친 후 비로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당시에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상호 양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종전부터 가능하였던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기한 수입중단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⑤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⑦보도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

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 방영된 주저앉는 소의 도축 동영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주저앉는 소문제를 질의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검역당국에 질의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이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미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과 미국 당국자의 발언(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계없다는 취지) 내용을 보도한 후, 방송진행자인 송일준 PD와 김보슬 PD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김보슬 PD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③ 다음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허용의 문제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④ 이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

전하다. 광우병 유발인자인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는 안전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사육소 중에 일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한 다음, 그와 대비하여 미국의 소비자연맹 관계자가 “검역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품 안전을 위해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15%만 개별 이력이 기록되고 있어 30개월령 이상 여부는 치아감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특정위험물질 규정 위반이 1천 건 정도 발견되었다는 점, 해마다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반추동물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소가 소를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

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의 발언 및 일본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⑥ 이후 다시 송일준 PD가 “쭈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김보슬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를 하고 있다.

(ㄸ) 먼저,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고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지극히 낮고 광우병에 민감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내용 중 ‘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김보슬 PD가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

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패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⑦보도를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3. 기재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제③보도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1. 기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및 별지 2. 기재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피고의 후속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판시한 2008. 5. 13.자 보도내용, 2008. 6. 17.자 보도내용, 2008. 7. 15.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소의 부위 중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부

위의 분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나라에 따라 분류기준이 상이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도 내용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6. 기재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에 관한 보도 내용은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

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 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1)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

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그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를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후속보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속보도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후속보도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적 주장과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단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허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심이 명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어, 허위의 정정을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정정보도 청구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를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보도와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사실적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지, 그와 별개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포함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 역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나아가 그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본 다수의견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

이 필요하고,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상태에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주

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단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는 사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보유한 사실, 국내 정상인 529명에 대한 조사결과 그 중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엠엠(MM)형으로 밝혀진 사실, 2003. 5. 경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프리온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코돈 129번에서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는 정상인의 42%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형 유전자를 의미한다)를 가지는 데 반하여 영국에서 발생된 모든 새로운 인간광우병 환자들은 100%가 코돈 129번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므로 코돈 129번의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전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인간광우병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내용의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 원고 또한 스스로 2007. 9.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④보도는 코돈 129번 유전자 엠엠(MM)형과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한국인 및 영국인, 미국인의 각 국민별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비율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낮은 다른 국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보도의 핵심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

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이 허위라고 보려면 그것이 근거로 삼은 과학적 증거에 과학적 원리에 반하는 심각한 불합리성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로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허위성 판단의 증거로 거시한 갑11호증 내지 갑15호증은 모두 이 사건 방송 후 인간광우병 발병과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 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엠엠(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영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일 뿐이고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취약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과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정도뿐이다.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영국인에 한하여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일 뿐이어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그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④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

정만을 들어, 한국인의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아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제④보도가 허위보도라는 이유의 하나로, 사실과 허위 어느 쪽으로도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그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그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도가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단정적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송일준 PD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

약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정은 아나운서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간광우병 환자와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그 보도사실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추론에 일정한 한계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 보도의 표현 중에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인 문구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표현방식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보도를 단정적인 보도로서 허위성이 있다고 본다면 정정보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도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이 사건 보도를 한 “PD수첩” 프로그램은 이른바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에 관하여 기획취재와 분석을 거쳐 문제제기와 비판, 감시와 방향제시 등 역할을 목표로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책임추궁, 비난, 시정요구 등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논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 편향, 오류 등 크고 작은 잘못이 개재될 가능성 또한 높다. 언론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 구제수단은 정부나 사회 주도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다양한 여론형성, 소수자·반대자들의 의사표현의 통로 등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

는 중요한 역할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보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를 보는 독자(시청자)들에게 종전에 제시한 사실보도나 주장과 견해가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인데, 언론보도 중 그와 같이 취급해도 좋을 정도로 신뢰성 없는 자료에 기초하였거나 완전히 외면될 정도의 가설에 따른 보도가 아닌 한 정정보도를 선불리 허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의 보도는 사실의 보도라기보다는 의견과 주장의 측면이 강한 보도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위험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치유가 불가능하여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것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음식으로 광범위하게 섭취하고 있는 쇠고기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하는 기전(機轉)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것이 거의 없어 더욱 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질병이다. 따라서 인간광우병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감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감염이라는 결과 자체가 더 이상 돌이킬 여지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감염위험인자가 될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만 보도를 통하여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언론시장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질병 감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질병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감염위험인자로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조차 제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것을 예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었다가 설사 그것이 나중에 가서 틀린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도 더욱 끔찍한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관한 보도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틀림없다’고 무조건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나서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그 정보를 제공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관련된 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내세워 정보제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심한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이견

가.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이 의견의 표명이라는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동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⑤보도의 요체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한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본 대로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터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보도의 표현으로 볼 때 과연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바로서, 이를 오로지 종전의 수입위생조건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과의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은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

는 부분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및 미국 모두 WTO 협정 가입국으로서 그 부속협정인 GATT 제20조b항과 WTO SPS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인간 등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GATT 제20조b항,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항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 및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계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7.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⑦보도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할 수 없다.

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있어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에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3. 2002다49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 중 원고가 정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가 그 말미에 가치평가적인 어휘인 '의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된 구체적인 과거 시점의 원고의 행위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표현으로 입증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이 사건 제⑦보도는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나 원고가 계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2007. 6. 30.부터 7. 8.까지 두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고 있다.

다. 의견은 대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의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사건 제⑦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미흡하다거나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일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 이용훈

대법관 : 박시환

대법관 : 김지형

대법관 : 김능환

대법관 : 전수안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 차한성

주 심

대법관 : 양창수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 민일영

대법관 : 이인복

대법관 : 이상훈

대법관 : 박병대

[별지 1]**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의 보도,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한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 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2]**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와이.에이.브이.와이(WAVY) 텔레비전 방송이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보도,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엠.알.아이(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루이 “일반 크로이펠트 야콥병(CJD)은 엠.알.아이(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vCJD)이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끝.

[별지 3]**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 오게 된다”라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4]**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엠엠(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엠엠(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이춘근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이춘근 PD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보도 끝.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보슬 피디(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김보슬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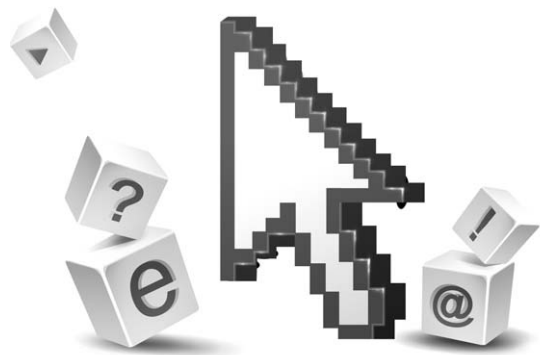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이춘근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이춘근 PD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7]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도축장에서 다운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일본판례]

**자살한 고교생의 어머니와 그의 수임변호사가
고소 또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원 고 : 고오노 타로 (甲野太郎)

피 고 : 오토야마 하나코 (乙山花子)

헤이가와 마츠오 (丙川松夫)

사건명 :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대상사건 : 나가노(長野)지법 우에다(上田)지부

2009(7)140호

판결내용 : 일부 인용(항소)

참조조문 : 민법 709조, 710조, 710조의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乙山花子は 원고에 대해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신문의 전현판(全縣版) 조간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3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丙川松夫는 원고에 대해 전기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의 전현판 조간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2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3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4.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1.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엔을 지급하고,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가산금리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전기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의 전현판 조간에 별지4 기재의 사죄광고를 1회 실되, 제목은 17포인트의 고딕체 활자로 하고, 원고 및 피고들의 이름은 14포인트의 활자로 하며 기타 부분은 12포인트의 활자로 각각의 활자를 사용하여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丁原고교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이하 「본건 블로그」로 한다) 모두부분(1항)에 별지5 기재의 사죄광고를, 제목은 17포인트의 고딕체 활자로, 원고 및 피고들의 이름은 14포인트의 활자로, 기타 부분은 12포인트의 활자로 하여 1년 6개월간 게재하라.

2. 사안의 요지

나가노(長野)현 丁原고등학교 (현재는 戊田고등학교, 이하「본건 고교」로 한다) 학생인 고오다타케오(甲田竹夫·이하「竹夫」로 한다)가 2005년 12월 6일 자택에서 자살했는데, 竹夫의 모친인 피고 乙山花子(이하「피고花子」로 한다) 및 피고花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인 피고 丙川松夫(이하「피고丙川」로 한다)는 ①본건 고교의 교장인 원고가, 竹夫에 대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고소장(이하「본건 고소장」으로 한다)을 나가노현 마루코(丸子)경찰서장에게 제출했으며(이하「본건 고소」로 한다) ②본건 고소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이하「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으로 한다) 기자들에게 본건 고소장 등을 배포하는 등 본건 고소에 대해 설명하고 ③본건 블로그에 본건 고소장을 게재했으며 ④본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전기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본건은 피고들의 전기 ①~④의 행위 모두가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민법709조, 715조 <원고는 피고花子와 피고丙川가 위임관계 혹은 위임유사(類似)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사무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피고花子가 피고丙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19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600만엔을 연대해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가산 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동법 723조에 근거하여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3. 전제사실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은 말미에 그 증거를 적시한다)

1. 당사자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1974년 나가노현에 교원으로 채용되어, 2005년 4월부터 본건 고교의 교장으로 재임중인 자이다.

(2) 피고花子는 학생인 竹夫의 모친이다.

(3) 피고丙川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며, 본건 고소에서 피고花子의 대리인이다.

(4) 竹夫는 2005년 4월 본건 고교 건설공학과에 입학, 1학년 9반(이하「1학년 9반」으로 한다)에 편성되었으며, 본건 고교의 배구부(이하「배구부」로 한다)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12월 6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2. 竹夫의 가출 및 不登校 등에 관하여 (2005년의 경우)

(1) 피고花子는 5월 29일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 竹夫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한 후 竹夫에게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竹夫는 5월 30일 가출했으나 본건 고교에는 등교하지 않았다.(이하「5월 하순의 가출」로 한다)

(2) 竹夫의 담임교사인 오토노우메오(乙野梅夫·이하「乙野교사」로 한다)는 5월 30일 오전의 자율학습시간에 竹夫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 오전 9시 경 모친인 피고花子에게 연락했으며, 피고花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竹夫는 그날 밤 가족들 몰래 자택에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5월 31일 아침 가족들 몰래 다시 가출했다.

(3) 乙野교사와 피고花子 및 배구부 부원들은 5월 31일 竹夫를 찾아 나섰는데, 竹夫는 오후 1시 30분경 佐久시내의 서점에서 발견되었다. 피고花子는 당시 5월 하순의 가출에 관한 사정을 본건 고교에 설명했다.

(4) 竹夫는 8월 30일 본건 고교에 등교하지 않았으며, 오후 8시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이하「8월 하순의 가출」로 한다) 피고花子는 9월 1일부터 乙野교사와 함께 竹夫를 찾아 나섰는데, 竹夫는 9월 5일 도쿄도 내의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

고 있었다. 竹夫는 9월 26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3. 보호자 간담회의 실시 및 竹夫의 첫 번째 정신과 수진(受診) 등에 관하여

(1) 피고花子は 竹夫의 8월 하순 가출에 대한 본건 고교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고,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이에 본건 고교의 보호자들에게 竹夫의 가출 등에 관한 본건 고교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했으며, 메일을 수신한 보호자들로부터 본건 고교에 문의가 잇달았다. 본건 고교는 9월 15일에 1학년 9반의 현황 설명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9월 16일 오후 7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건 고교는 1학년 9반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한편, 피고花子택의 우편포스트에도 그 취지문을 넣어두었다.

(2) 竹夫는 9월 15일 오후 8시부터 피고花子에 끌려 'むねの(무네노)木公園클리닉' (정신과, 이하「본건 클리닉」으로 한다) 을 수진(受診)했다. 본건 클리닉의 의사는, 竹夫에 대해「우울증」,「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장애, 불안, 어지럼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신체증상과 함께 희사연려(希死念慮)도 출현하고 있다」는 진단서(이하「9월 15일자 진단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어 9월 22일에 다시 진찰을 받기로 하였으나, 竹夫는 진찰을 받지 않았다.

(3) 피고花子は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나가노현(長野縣)교육위원회 직원인 丙川春夫(이하「현교육위의 丙川」로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9월 16일 개최 예정인 보호자간담회를 중지하고, 피고花子와 竹夫가 참가할 수 있는 일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는 한편 9월 15일에 취득한 진단서를 팩스로 송신했다.

(4) 원고는 9월 16일 현교육위의 丙川로부터 피고花子が 보호자간담회 개최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花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자간담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없음을 알리고, 예정대로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1학년 9반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5) 竹夫는 9월 22일 본건 클리닉을 수진하지 않았으나 피고花子は 9월 15일자 진단서를 본건 고교에 팩스로 송신했다.

4. 竹夫의 등교 등에 관하여

竹夫는 9월 26일 나가노현 의회의원인 丁川夏子(이하「丁川縣議」로 한다)를 따라 본건 고교에 등교하여 오후수업을 받은 후 귀가했다. 竹夫는 9월 27일에도 등교하여 수업을 받았으나 오후 1시 30분경 교사에 게 몸이 불편하다며 조퇴하고, 그 후 등교하지 않았다.

5. 竹夫의 그 이후의 정신과 진찰 및 원고의 서신 등의 우송 등에 관하여

(1) 竹夫는 9월 27일 본건 고교에서 조퇴한 후 본건 클리닉에서 수진 중 가슴부위가 이상하다며 호소했다. 본건 클리닉의 의사는「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장애, 불안, 어지럼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신체증상과 함께 희사연려도 출현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함을 진단한다」는 우울증 진단서(이하「9월 27일자 진단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 때 竹夫는 6일분의 약처방을 받고, 10월 3일에 진찰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끝내 진찰을 받지 않았다.

(2) 피고花子は 9월 28일 오전 8시 10분경 9월 27일자 진단서를 본건 고교에 팩스로 송신했다.

(3) 원고는 피고花子が 10월 26일 밤 9시 竹夫를 데리고 본건 고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

(4) 원고는 11월 4일 나가노현 교육위원회와 상담한 후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그동안 나(학교장)와 학급담임선생은 竹夫군이 하루 빨리 등교하도록 종용해왔습니다」 「竹夫

군의 결석일수, 결과(缺課) 등은 별지와 같습니다. 결석이 계속되면 결과시수(缺課時數)가 규정을 초과하여 2학년 진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서면 ② 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 ③ 학습성적의 평정 및 학점인정을 설명한 서면(이하「11월 4일자 서면 등」으로 한다) 등을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댁에 우송했다.

(4) 竹夫는 11월 6일 본건클리닉을 수진했다. 담당 의사는 「신경쇠약상태로 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곤란, 불안, 현기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증상과 함께 회사(希死)염려도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현재 통원가료중이나 현재도 정신증상은 동요경향을 보여 학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휴학하면서 계속 가료가 필요함을 진단한다」는 진단서(이하「11월 6일자 진단서」를 9월 15일자 진단서 및 9월 27일자 진단서를 합쳐 「본건진단서 3통」으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 때 竹夫는 7일분 투약처방을 받고 11월 13일 검진이 예약되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5) 본건 고교는 11월 14일 피고花子로부터 11월 6일자 진단서의 우송을 받았다.

(6) 원고는 11월 15일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4월 입학이래 학교생활에서 竹夫과 관련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으로 개선에 노력해왔다. 일례로 배구부 2학년생들이 하급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프라스틱행거로 하급생을 구타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등의 서면과 함께 ② 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이상의 서면을 합쳐, 이하「11월 15일자 서면 등」으로 한다)을 피고花子 앞으로 된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집에 우송했다.

(7) 원고는 11월 28일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11월 4일에도 통지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 결석하여 결과시수(缺課時

數)가 규정을 넘는 과목도 있어 2학년 진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등교시켜주기 바랍니다」라는 서면과 함께 ② 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11월 4일자 서면 및 11월 15일자 서면을 합쳐 「본건 각 통지서면등」으로 한다)을 피고花子 앞으로 된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집에 우송했다.

6. 12월 3일의 논의에 관하여

(1)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고교 교육과의 戊原秋夫(이하「현교육위의 戊原」로 한다), 본건 고교의 교감인 甲川冬夫(이하「甲川교감」으로 한다) 및 乙野교사는 12월 3일 오후 5시경 피고花子집을 방문하여 의논한 끝에 竹夫는 12월 5일부터 등교하겠다고 말했다.

(2) 피고花子は 12월 4일 竹夫가 등교할 때 1학년 9반 학생 38명에게 배포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과에 관한 피고花子の 주장을 기재한 내용과 함께 「아직 클럽의 일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지만, 1학년 9반의 몇몇 학생과 부모들로부터 격려로 용기를 얻어 등교할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서면(이하「피고花子の 12월 4일자 서면」으로 한다)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었다.

(3) 佐久경찰서 안전과 과장은, 피고花子로부터 竹夫를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의뢰를 받고 12월 5일 아침 피고花子댁을 방문했으나 竹夫는 등교를 거부했다.

7. 竹夫의 자살에 관하여

竹夫는, 12월 6일 오전 5시경 자기방의 옷걸이에 자전거용 체인을 걸어 목을 매달았다. 피고花子は 동일 오전 6시 40분경 竹夫를 발견, 소방본부에 통보했으며, 竹夫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7시 28분 사망했다.

8. 원고의 보도관계자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원고는 12월 6일 오후 4시 40분경 본건고교에서 기자회견(이하「원고의 기자회견」으로 한다)을 가지고 「등교 거부나 자살에 연관될만한 괴롭힘이나 폭력은 없었다. 피고花子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竹夫군은 8월 하순 외에 5월 하순에도 가출한 일이 있으며, 그

때 모친인 피고花子の 지갑에서 竹夫군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고, 그 일로 아마 모친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은 것 같다(이하「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로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9. 본건 고소 등에 관하여

(1) 피고花子は 2006년 1월 10일 피고丙川을 대리인으로 하여 별지6 기재의 내용으로 본건 고소를 했다. 고소의 개략은 ①원고가 우울증이 있는 竹夫에게 등교를 강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②竹夫가 피고花子の 지갑에서 2만엔을 훔친 일로 피고花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가출했다는 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2) 피고丙川은, 본건 고소를 한 당일, 피고花子の 대리인으로서 나가노현청에서 본건 기자회견을 갖고 본건 고소장 등의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본건 고교의 교장인 원고가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허위이며, 원고는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 결과 이날의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신문 석간에 본건 고소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다음날에는 추니치(中日)신문, 산케이(産経)신문, 마이니치(毎日)신문, 시나노마이니치신문 조간 및 아사히(朝日)신문 등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3) 원고는 본건 고교의 교장으로서 본건 고교의 동창회나 PTA의 회합 등에서 본건 고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또한 원고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익명의 전화가 본건 고교로 300회 이상 걸려오기도 했으며, 원고의 딸 혼처로부터도 본건 고소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4) 본건 고소와 관련하여 나가노지방검찰청 우에타(上田)지부는 원고를 약 3주간 9회에 걸쳐 조사한 후 2007년 10월 4일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불충

분으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시나노마이니치신문사는 다음날「상급생 가재(家裁) 송치, 교장은 불기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청의 결정내용과 함께「실행행위성이 없고,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이유를 기사화하여 보도했다.

(5) 본건 블로그에는, 2006년 3월 5일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2006년 3월 15일 이후「竹夫군의 마음을 상하게 한, 丁原고교로부터 받은 갖가지 행동과 살인죄의 이유」라는 제목의 문서가 기재되어, 그 중에는 원고가 竹夫를 압박하여 자살로 내몰았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기재도 있었다. 2007년 5월 12일경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는 본건 고소장이 게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게재는 피고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는 원고를 비방, 중상하는 내용이 기재된 일도 있었다.

10. 본건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동 청구서면은 피고丙川에게 동월 12일, 피고花子에게 동월 10일에 각각 도달했다.

(2) 원고는 2009년 4월 15일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3) 피고丙川은 2009년 12월 7일 본건 소송과 관련, 다음과 같이 기재된 준비서면(이하「본건 준비서면」으로 한다)을 제출하고 2010년 2월 5일 본건 구두변론 기일에 진술했다.

(가) 「원고가 甲田竹夫를 자살로 내몬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1페이지)

(나) 「竹夫의 사망 직후에 진행된 원고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1페이지)

(다) 「등교를 강요함으로써 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 및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2페이지)

(라) 「원고는 竹夫의 자살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추궁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10페이지)

(마) 「원고의 상기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11페이지)

4. 쟁점

1. 본건 고소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1 ·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적시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여부 (쟁점2 ·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3. 피고들의 본건 소송 활동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쟁점3 ·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4. 본건 고소,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본건 블로그 및 본건 준비서면 (이하 「본건 고소 등」으로 한다) 과 관련한 적시사실 (이하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로 한다) 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부정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인정되느냐의 여부 (쟁점4 ·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 여부)

(1) 피고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

(2)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들이 진실인지의 여부

(3) 전기 (2)에서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쟁점5)

6. 원고의 손해 (쟁점6)

7. 사죄광고 등의 게재 필요 여부 (쟁점7)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 (쟁점8)

5. 쟁점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竹夫의 살해를 의도한 일이 없으며, 실행한 일도 없다.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며, 사자인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본건 고소는, 원고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에 근거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竹夫의 살해를 의도하고 실행했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공모하였기에 본건 고소를 했다. 그 결과 원고는 본건 고소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의자가 되어 명예 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1) 전기1(1) 중 원고는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에 관련한 발언을 진실로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한 것이며, 그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원고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

(가) 竹夫는 배구부에서 부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

(나) 그러나 2005년 본건 고교에 부임한 원고에게 있어서는 배구부내에서의 괴롭힘이나 폭력의 존재를

부인하고 배구부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배구부에 속한 학생으로부터 배구부의 활동과 관련, 「희사염려」(希死念慮)를 수반하는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도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여 배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학생에게 등교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최악의 경우 당사자가 자살을 해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건의 실패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에게 질타(叱咤)격려나 의사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무리하게 외출이나 출근 또는 등교를 촉구하면 자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원고는 전기 우울증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희사염려」가 우려된다는 본건 진단서 3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竹夫의 보호자인 피고花子の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호자회의 개최를 강행하고 竹夫의 등교를 강요하는 본건 각통지서 등을 피고花子와 竹夫에게 우송했으며, 부하인 甲川교감, 乙野교사에게 竹夫와의 면회를 명해 竹夫에게서 등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라) 전기(가) 내지 (다)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건 고소장에 기재된대로의 방법으로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전기1(2)중 피고들은 본건 고소를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부인 내지 다툰다. 전기(1)과 같이 본건 고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1.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년 1월 1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피고花子是, 피고丙川와 게재 여부를 상담한 후 본건 블로그에 전기 제3과 같은 기사를 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3)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모두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전기1(1)은 인정하나, 동(2)중 피고花子が 피고丙川와 게재 여부를 협의했다는 점은 부인한다. 전기와 같이 원고는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한 것이며 그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

7.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본건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본건 소송에서 그 취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본건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부인 내지 다툰다.

8.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에 의한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 과실이 부정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사실의 공공성 및 목적의 공익성에 관하여

(가) 본건고소 등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본건 고교의 학생, 학부모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이며, 竹夫의 자살 직후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들간에 논쟁될 정도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사실이다.

(나) 피고들은, 마스크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동종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본건 고소 등을 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시사실을 공표했다.

(2) 적시사실의 진실성 및 진실상당성에 관하여

(가) 전기와 같이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진실이다.

(나) 설령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1) 전기1(1)은 부인한다.

피고들의 본건고소 등에 관련한 각 행위는 나가노 지법에서의 민사소송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이라 할 수 없다.

(2) 전기1(2)는 모두 부인한다.

(가) 원고는 竹夫의 살해를 의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竹夫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으므로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이하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있어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

(ㄱ) 피고花子は 竹夫의 자살원인에 대해 처음에는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竹夫의 우울증을 전제로, 원고가 본건 각 통지서면 등을 송부했고, 12월 3일의 대화에서 竹夫에게 등교를 촉구한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변천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花子が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12월 3일에 이야기를 나눌 때는 피고花子도 竹夫에게 등교를 독촉했다. 그렇다면 원고가 竹夫에 대해 등교를 재촉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면, 피고花子도 竹夫에 대한 살인을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ㄴ) 피고花子は 실제적으로는 竹夫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때문에 竹夫에 대해 본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ㄷ) 이러한 사정 등이 있는데도 피고丙川는 법률전문가로서 본건 고소와 관련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본건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을 작성했다.

9. 쟁점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1. 피고丙川의 주장

변호사에게는 사건의 진행에 상응하여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태가 생겨도 면책의 여지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본건에서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피고丙川의 행위는 정당하며 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丙川의 본건에 있어서의 각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면책될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1) 위자료

(가) 원고는 본건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2007년 10월 4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살인죄와 명예훼손의 피의자로 취급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력하지 않은 피고花子の 행위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장기간 고통을 주었으므로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본건 고교의 동창회 등의 회합뿐만 아니라 장녀의 결혼상대방으로부터도 본건고소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는 것에서 큰 굴욕감을 느꼈다.

(다) 잡지나 인터넷상에서도 원고에 대한 비난과 중상이 기재되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으며, 본건 고교에는 보도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300회를 넘는 비난전화가 걸려왔다.

(라) 위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은 500만엔으로도 부족하다.

(2) 변호사비용으로 100만엔

(3) 합계 600만엔

2. 피고들의 주장

전기(1) 가운데, 원고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花子が 검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11. 쟁점 7 사죄광고 등 게재의 필요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기자회견으로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 등이 지방지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보도되었다. 또한 본건 블로그에서도 1년반 이상, 불기소처분 후에도 그대로 본건 고소장이 계속 게재되었다. 이러

한 사정에 기반한 피고들의 악질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전기 제1의 2 및 3 기재의 사죄광고를 신문과 본건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사죄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다.

12. 쟁점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2006년 1월 10일에 행하여진 본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건 소송이 제기된 2009년 4월 15일은 이미 불법행위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다. 피고들은 민법 724조에 근거한 소멸시효를 원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으며, 피고丙川에 대해서는 동월 12일에, 피고花子에 대해서는 동월 10일에 각각 서면이 도달했다. 전기 서면에 의한 청구는 민법 153조 소정의 최고(催告)에 해당하는 바, 본건 소송은 그 최고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

13. 쟁점 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에 관하여

고소는, 피소자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위험을 수반하므로, 특정인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는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의 혐의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고

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2.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고소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고소는, 별지6과 같은 것이나 그 골자는 ①원고는, 竹夫의 우울증과 희사(希死)염려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한 원고의 행위에 의해 竹夫가 자살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면서, ②배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竹夫의 등교를 강력하게 독촉하고, 최악의 경우 竹夫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① 및 ②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③본건 각 통지서면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④12월 3일, 부하인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명령하여 가진 회합자리에서 竹夫에게 등교를 약속하게 하고(③ 및 ④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 ⑤그 결과 竹夫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하 본건 고소장 기재의 방법에 의해 원고가 竹夫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소내용인 ① 내지 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竹夫의 정신상태에 대한 원고의 인식 등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①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竹夫를 자살로 내몰게 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분명히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竹夫는 본건 클리닉에 통원하고 있었고, 본건 진단서 3통의 기재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정신상태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가 있으며, 그 후 12월 6일에 자살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花子は 예약한 날에 竹夫를 본건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다. 특히 전기고소내용에 의하면 11월 6일 이후 竹夫가 사망한 12월 6일까지의 약 1개월간 竹夫가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정신과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花子は 竹夫가 사망하기 3일 전에 있었던 12월 3일의 회합에 竹夫를 동석시켜 강하게 발언을 재촉하는 등 竹夫의 병세

등에 대해 걱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피고花子の 행동은 결국 피고花子 자신도, 본건 고교에서의 문제로 竹夫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금방이라도 자살하리라고 예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인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인 피고花子조차도 竹夫의 자살을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竹夫이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상태였다고 인식하거나, 자살을 예견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竹夫를 자살로 몰아갈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2) 원고의 竹夫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에 대해, 전기②와 같이 원고가 배구부를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竹夫의 등교를 강요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竹夫가 자살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교장으로서는 배구부의 유지, 존속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배구부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배구부의 명예가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이를 은폐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으로 배구부 소속 학생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본건에 있어서의 마스크 등의 보도경위를 보면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면,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하려고 했다는 동기 등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배구부를 지키기 위해

竹夫가 자살하는 일이 있어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花子 등에게 송부한 본건 각 통지서면 등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전기③과 같이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수령했음에도 굳이 피고花子택에 본건 각 통지서면등을 송부한 것은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본건 각 통지서면 등에는 竹夫를 염려하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竹夫가 건강하게 본건 고교에 등교할 것을 원하는 것이었으며, 그 표현은 극히 온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받고도 본건 각 통지서면등을 송부한 것을 가지고 굳이 竹夫의 우울증 증세를 악화시키려 했다든가 자살로 내몰 의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추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본건 각 통지서면등의 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교장으로서 竹夫의 진급여부를 걱정하면서 사후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전기 주장은, 본건 각 통지서면등의 의의를 현저히 곡해한 것이며, 도저히 채용할 수가 없다.

(4) 12월 3일의 회합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전기④와 같이 부하인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명령하여 12월 3일에 회합을 갖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竹夫에게 등교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것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2월 3일의 회합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더하여 <증거생략>에 의하면 이하의 사실이 인정된다.

(ㄱ) 피고花子は, 12월 2일 오전 1시 30분 나가노현 부지사에게 본건 고교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내고, 본건 고교 관계자들에게 다음날 오후 5시에 피

고花子택에 와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신하여 거쳐 12월 3일의 회합약속이 이루어졌다.

(ㄴ) 甲川교감, 乙野교사, 나가노현 교육위의 戊原는 3일 오후 5시 피고花子택을 방문, 上田교육사무소의 乙原一郎 및 丁川나가노현의원 입회하에 회합을 가졌다. 피고花子は 이 회합에서 동석한 竹夫에게 「진실을 말해봐. 말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들을 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강하게 발언을 재촉했다.

또한 피고花子は 본건 고교, 배구부, 나가노현 교육위원회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竹夫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배구부의 학생들이 竹夫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줄 것, 전교생에게 괴롭힘이나 폭력을 못하도록 해줄 것, 2가지를 요구했다. 甲川교감, 乙野교사, 현교육위의 戊原는 이를 승낙하고 12월 5일부터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竹夫는 5일부터 등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의 전기④의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12월 3일의 회합은 피고花子の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부하에게 명령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12월 3일의 회합에서 피고花子도 竹夫의 등교를 희망했고, 등교조건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에 의하면 12월 3일의 회합과 관련한 피고들의 전기 주장은 실태(實態)가 없으며, 원고에게 있어서는 전혀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이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사실경과에 관해 ①원고로서는 竹夫가 곧 자살할 것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자살을 예견하는 일은 극히 어려웠다는 것. ②원고에게는 竹夫를 살해할 동기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③본건 각 통지서

면 등은 竹夫의 진급 가부(可否)를 걱정하고 그 선후책을 검토할 취지로 송부했음이 인정된다는 것. ④피고 花子도 竹夫의 등교를 찬성했다는 것 등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竹夫를 살해했다고는 도저히 추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고소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이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즉 피고들은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받고 竹夫의 정신적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살인죄를 주장하는데 이를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걸기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 없이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본건 고소 중, 원고가 살인죄를 범했다고 하는 본건 고소는, 피고들에게 사실관계의 신중한 조사를 요한다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또한 그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기 고소는 피고들이 의논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3. 본건 고소 중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고소에 관하여

(1)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 花子가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문제로 竹夫와 다툼 끝에 竹夫가 가출한 사실, 피고 花子가 경찰에 竹夫의 수색원을 내고 乙野교사와 배우부 부원들과 竹夫를 찾아 다녔다는 사실, 竹夫가 5월 30일 밤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집을 나간 후 오후 시내의 서점에서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이상의 5월 하순 가출 경과에 의하면, 竹夫의 행동은 피고 花子와의 알력에 의한 가출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었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5월 하순의 가출에 관한 발언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본건 고소 중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범죄혐의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 없이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본건 고소 중 竹夫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본건 고소는, 피고들에게 사실관계의 신중한 조사를 요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기 고소는 피고들이 의논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할 수가 있다.

14. 쟁점 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의 내용 및 본건 블로그의 게재 경과에 대해서는, 전제사실과 같다.

더욱이 피고 丙川은 본건 블로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나가노지법의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 花子는 블로그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피고 丙川에게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 丙川의 전기진술은 신용할 수가 없다.

2. 이상의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피고 丙川은 본건 고소장 등의 자료를 배포한 다음 본건 고소내용을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본건 고소내용이 그대로 회견 결과가 되었다고 인정된다. 이는 각 신문에 보도되어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 제13에서 검토한 본건 고소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본건 기자회견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 등을 훼손했음이 인정된다.

3. 또한 본건 블로그는 피고花子が 개설한 것으로, 전기 2와 같이 본건 고소장 등을 게재한 본건 블로그를 일반인들이 통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보았을 경우,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블로그에 의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4.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에 의한 설명 및 본건 블로그에 의한 게재는, 모두 피고들이 의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15. 쟁점 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은 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사자간의 이해와 개인적인 감정의 대립이 심해 관련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쟁점들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판단됨으로 훼손된 명예나 신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소송활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여기에서 본건을 검토해 보면, 본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소송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본건 준

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준비서면에 관련한 주장은,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16. 쟁점 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 여부 대한 판단

1.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면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검토해 본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피고들이 竹夫의 자살에 관한 본건 고소 등 행정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학생의 자살문제는 분명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인정되며,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은,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혹은 피고들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 원고가 竹夫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전기와 같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의 근거에 대해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든가 혹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명백하며, 피고들의 항변은 부당하다.

17. 쟁점 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자의 의뢰 취지에 따라 위임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바, 의뢰자의 의뢰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라든가, 그 의뢰내용을 실현할 경우 초래되는 위법한 결과에 대해 변호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만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의뢰자의 의뢰에 의해 행한 행위는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丙川는 본건 고소의 내용 및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기와 같다. 또한 피고丙川에게는 본건 고소를 한 사실 및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한 사실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丙川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정당업무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18. 쟁점 6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불법행위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라는 범죄혐의를 거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나 확인도 없이 본건 고소를 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본건 고소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본건블로그에도 본건 고소의 내용을 게시했음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전기와 같이 본건 고소 등에 의한 각 적시사실의 내용은,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으로 매스컴에 설명되

고 본건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보도사가 보도했고, 본건 블로그도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은 광범위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굴욕적인 입장에 몰리는가 하면 익명의 다수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딸의 혼례와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등 필요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본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만엔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변호사비용

본건 사안의 내용, 본건 소송의 심리경과, 본건의 인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5만엔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 중 합계 165만엔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19. 쟁점 7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기 제18과 같이 원고가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것이 인정되며,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소사실이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실, 본건 블로그에 장기간 게재된 사실, 동창회 등으로부터 설명을 요구받은 사실,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익명의 전화를 300회 이상 받은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원고를 비방·중상하는 기제가 다수 올라 있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한편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소에서, 2007년 10월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된

사실, 나가노지법에서의 민사소송사건에서도 2009년 3월 피고花子が 원고가 되고, 원고 등을 피고로 하여 竹夫의 자살에 관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청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러한 판결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본건 블로그에도 소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전기1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본건 고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상으로 매스컴에 고소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용인하고, 본건 블로그와 인터넷상에도 공개했으며, 피고들이 이러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위법한 본건 고소내용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본건 고소에 의해 지대한 정신적 손해를 받게 되었다. 신문보도와 본건 블로그의 독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 2와 같이 본건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신문보도와 본건 블로그 게재 등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후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잃은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복조치로, 피고들에 대해 주문계기(主文掲記)의 각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더욱이 원고는 본건 블로그에도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 신문은 나가노현내에서 널리 구독되고 있는 신문이므로, 이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면 원고가 잃은 명예 등의 회복조치로서는 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본건 블로그에까지 사죄광고를 게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 쟁점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불법행위시부터 본건 소송의 제기까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민법724조 소정의 소멸시효에 의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는 최초의 불법행위(본건 고소가 있었던 2006년 1월 10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를 했으며, 동 서면은 그 때 당시 도달하여 동법 153조 소정의 최고(催告)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최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9년 4월 15일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최고가 있었던 시점(피고花子は 2008년 12월 10일, 피고丙川는 동월 12일)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송과 관련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있으며, 아직 소멸시효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21.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165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다음날인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가산 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고, 주문 제 2 및 제3기재대로의 사죄광고 게재를 명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認容)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사죄광고(생략)

별지2 사죄광고

「나는 2006년 1월 10일 乙山花子の 대리인으로서 甲野太郎씨를 형사고소한 후, 長野縣 丁原고등학교(현재는 戊田고등학교) 교장이었던 甲野太郎씨가 동고교에 재학중이던 甲野竹夫(乙山花子の 아들)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野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甲野太郎(교장)씨가 甲野竹夫(고교생)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는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甲野竹夫(고교생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형사고소 및 기자회견에 의해 甲野太郎씨의 명예 및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한데 대하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丙川竹夫

- 출처 : 『判例時報』 No. 2109호, 103~117
- 번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 일러두기: 문장의 자연스런 번역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역자가 보충한 문구는 []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시하였음.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세세한 정보들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플로리다주(State of Florida) 對 돈태 라손 모리스(Dontae Rashawn Morris)
미국 플로리다 법원 제13순회부
결정일 : 2011. 3. 22.
플로리다주 측 대리인: 스코트 하몬 (Scott Harmon), 검사보, 주 검찰청 소속, 탐파, 플로리다
피고인 측 대리인: 바이론 하일만(Byron Hileman), 보조지역변호사, 바투우, 플로리다
참가인 미디어 제너럴 측 대리인: 그레그 디 토마스(Gregg D. Thomas)와 폴 알 맥카두(Paul R. McAdoo), 토마스 앤 로키케로 소속, 탐파

주 문

플로리다주법 제119장의 조항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증거개시 자료들에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 및 그에 대해 보완하고 논점을 명확히 한 추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명령을 허가한다.

이 유

이 사건은 2011년 1월 26일, 증거개시 자료들에 대해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본법원에 제기되었다. 2011년 2월 1일, 앞의 신청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추가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3일, 미디어 제너럴 운영사(Media General Operations, Inc.) 이하 ‘미디어 제너럴’ 로 약칭)가 플로리다주법 제119장의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개시증거 자료들에 대해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한 피고인의 신청에 반대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와 법률의견서를 심사한 후, 본법원은 이하에서와 같이 결정한다.

사건의 배경

10-CF-010203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개의 일급 살인(소인(誦因) 1,2), 호송 중 도주(소인 3), 그리고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4)로 기소되었다. 2010년 7월 22일, 주는 소인 1과 2에 대하여 사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CF-010373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과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2)로 기소되었다.

10-CF-010744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 총기소지 강도(소인 2)로 기소되었다.

11-CF-000896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 총기소지 강도(소인 2), 그리고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3)로 기소되었다.

2011년 1월 26일, 피고인은 법원의 즉각적인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2일에 추가 신청을 하였다.

2011년 2월 3일, 미디어 제너럴사(社)가 법률의견서(Memorandum of Law)를 제출했다. 법원은 동사(同社)가 참가인 적격이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관하여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했다(비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더 이상 뉴스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하는 명령의 유효성을 다투던 뉴스매체에게 참가인 적격을 인정한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McIntosh, 340 So. 2d 904 [2 Med.L.Rptr. 1328]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하에서 피고인의 신청과 미디어 제너럴의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실시한다.

피고인의 신청

신청서에서, 피고인은 우리 법원에, 증거개시를 통해 특정의 문서, 비디오 자료, 디지털 녹음·녹화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잠정적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증거개시를 통해 문서 등이 공개되면 플로리다주법(the Florida Statutes) 제119조에 따라 [다른 이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막을 것을 구하는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법원이 개시증거 자료들을 비밀심리(in camera review) 절차를 의해서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비밀심리 절차를 거친 후에는, 그 개시 자료들이 플로리다주법 제119조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공문서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잠정적 보호명령을 구했다. 그 잠정적 보호기간은 (1) 그 자료들이 법원에 의해 비밀절차에 의해 심리되었고 그 후 일반에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때까지, 혹은 (2) 이 사건 피고에 대한 기소가 판결, 기각, 혹은 기타 종국 처분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혹은 (3) 적어도 여기의 기소사건들에 대한 배심원이 선정되어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외부와의 격리[역자: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신청 계속(繫屬) 중 그리고 신청결과로 발해질 잠정적 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탐파 경찰국(Tampa Police Department), 힐스보로우 보안청(Hillsborough Sheriff's Office), 의약검사소(Medical Examiner's Office), 공공 변호인 사무소(Public Defender's Office), 주 검찰청(State Attorney's Office), 플로리다주 법무부(the Florida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지역상담소 제 2부(the Regional Counsel's Office 2nd District)의 모든 담당자와 직원들 및 사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들, 참가인들(미디어 제너럴과 기타)과 그 변호인은 모두 위에 서술한 세 개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혹은 법원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 보호명령이 작용하는 대상이 되는 특정 증거와 이 사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공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해 주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아래에 열거하는 개시 증거 자료들이 보호명령에 의해 잠정적으로 봉인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에 따라 그 증거항목들의 디지털 오디오 녹음·비디오 녹화물을 포함하는 자료들도 공문서로서 공개되기 전에 편집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a. 안젤라 머피(Angela Murphy)의 진술의 일부
- b. 마커스 옥레스비(Marcus Oglesby)의 진술의 일부
- c. 애슐리 프라이스(Ashley Price)의 진술의 일부
- d. 퀴니샤 맥밀란(Quineshia McMillan)의 진술의 일부
- e. 상당한 이유의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서(the probable cause affidavit)^{역자주1)}상의 진술들
- f. 세드릭 휴(Cedric Hough)의 진술의 일부
- g.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비디오(“dash-cam” video)의 녹취록
- h.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The “dash-cam” video)
- i. 총기발사 뒤에 이루어진 라디오 교신의 녹취록 (The transcript of radio traffic following the

shooting)

- j. 비디오에서 뽑은 정지 사진들과 그 사진들의 동일성을 기술하고 있는 경찰 보고서들
- k. 형사 듀란(Duran)이 10-CF-010373 사건의 피고인에게 한 전화[내용]
- l. 경찰 보고서들—두 개의 사건에 관한 총기류 시험 결과(ballistics testing results)에 대한 전문 보고서들(hearsay reports)을 포함하여—에 담겨 있는 주장들
- m. 10-CF-010744 사건의 상당한 이유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서

피고인은 열거한 개시 자료들의 비공개 혹은 공개 유보를 요청하는 두 개의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가 주장하기에는, 그가 반대하는 개시 자료의 많은 부분이 플로리다주법 제119.071(2)(e)조에서 규정된 예외에 해당한다. 동조는 “체포된 피의자의 자백의 실질(the substance of a confession)을 드러내는 정보는... 형사사건이 판결, 기각, 혹은 기타 종국 처분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법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은 어떤 진술이 자백인가를 결정할 때 법원으로 하여금 “자백의 실질”이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해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백을 함축하고 있지만 범죄의 모든 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진술들도 [동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길거리 속어, 암호를 사용한 얘기, 완곡어법, 깡단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그 새끼 대가리를 따부렸다” (“I pops’ em”)와 같은 말들도 [아마도 범죄를 은연중 암시하기 때문에]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역자주1) 보통은 경찰관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선서에 의한 진술이 담겨져 있다. 이 문서는 판사에게 체포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체포나 수색이 필요가 근거, 즉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특정의 개시 증거들—분명한 혹은 명백한 “자백”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이 공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것이다.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 제6조, 제14조 및 플로리다주헌법 제1장 제9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불편부당한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로 그 근거이다.

피고인은 적절한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대한 압박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개[폐쇄](closure)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 기소 사건들의 계속 중 개시 증거를 잠정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빼고는, 편파적이지 않은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판지(법정지)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잠정적 보호 명령에 의한 비공개[봉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부적절하게 넓지는 않은 방식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내세운다.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들이 심각하고 과도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 특히 경찰관의 장례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그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공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치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편견이 쏟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건들이 많은 피해자 수와 [여러 사건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겹치는 증거로 인해 힐스보로우 카운티에서 있었던 앞선 다른 모든 “유명한” 사건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배심원에 대한 개별적인 예비심문(voir dire)^{역자주2)}이나 격

리(sequestration)^{역자주3)}로는 [배심원의 편견을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고, 장차 윌리엄스 법칙(Williams rule)^{역자주4)}의 적용을 받을 앞선 범행[으로 주장되는 행동들]에 관한 증거자료들은 [이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므로] 유능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운다. 그는 많은 개시 자료들이 심판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 흘러나간 뉴스정보에 더하여] 앞에서 언급한 개시 자료들을 더 공개할 경우 이미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평판을 더욱 크게 불리하게 할 것이다.

미디어 제너럴의 법률의견서

잠정적인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반대하면서, 미디어 제너럴은 법률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구하는 개시 자료 중 개별적인 부분의 폐쇄 총 578쪽, 그리고 그보다 더 분량이 많은 전체문서의 폐쇄는, 불필요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 그리고 그에 관한 녹취록과 녹음·녹화물의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설 금지” 명령(“gag” order)^{역자주5)}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총 578쪽의 개시 자료와 기타 문서들에 관해 미디어 제너럴은 다투면서, 그 자료들이 플로리다주법 제 119.071(2)(e)조에 따라 비공개를 향유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그것이 “자백의 실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리가능한 부분은 공개될 수

역자주2) 배심원에 대해 편견이나 당사자, 증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이 하는 심문절차

역자주3) 배심원을 격리시켜, 배심원 이외의 자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함. 배심원이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보통은 배심원이 사건의 평의에 들어갈 때부터 평결에 이르기까지 행해지지만, 떠들썩한 사건 등에는 심리의 개시시부터 종결시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역자주4) 병행사건의 관련 증거를 배심재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칙이다. 윌리엄스 대 플로리다주 판결에서 유래했다. Williams v. Florida, 110 So. 2d 654 (Fla., 1959)

역자주5) 스캔들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과도한 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변호인, 기타 관계자들에게 대해서 신문기자 등에게 사건의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제너럴은 만약 법원이 자료들의 어느 부분이 자백의 실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결정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공문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에 관하여, 미디어 제너럴은 비디오의 비공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 제너럴은 주장하기를, 비디오의 전부공개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디오와 관련 자료들이 일반인들의 열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비디오와 관련자료들을 기록 관리인의 점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 미디어 제너럴은 주장하기를, 만약 비디오와 관련물들을 심사한 후, 일반 대중이나 대중매체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열람을 위한 다소 제한적인] 접근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정부의 책임을 평가, 비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에는] 자료전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미디어 제너럴은, 만약 법원이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를 심사해서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그 특정부분을 편집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제너럴은 법정 밖의 언론을 제한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사(同社)는 플로리다주 변호사회 규칙 제4-3.6 규칙은, 법정 밖에서의 언론을 금지하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풍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자: 이 규칙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발설금지명령 신청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의미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단 주(the State)가 문서들을 증거개시를

통해 형사피고인에게 공개하면, 그 문서들은 일반의 열람과 복사에 제공된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해둔다 (Times Publ. Co. v. State, 827 So. 2d 1040, 1042 [31 Med.L.Rptr. 1044](Fla. 2d DCA 2002) 참조; §119.011(3)(c)(5) Fla. Stat. (2010)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법원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청과 법률의견서를 심사하면서, 법원은 루이스 판결(Miami Herald Publishing Co. v. Lewis, 426 So. 2d 1[8Med.L.Rptr. 2281](Fla.1983))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형량하였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러한 제한이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가 (2) 재판지를 바꾸는 것 이외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3) 그러한 제한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가(Florida Freedom Newspapers, Inc. V. McCrary, 520 So. 2d 32, 35 [14 Med.L.Rptr. 2374](Fla. 1988)). 이 판결은 “루이스 판결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이유의 발견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혹은 연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더욱이, 플로리다주 형사소송 규칙(the Florida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 3.220(l)과 (m)조에 따라, 본법원은 증거개시기간 중 특정부분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충분한 이유의 제시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일반에의 공개를 제한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의 신청에서,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들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특히 경찰관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미 널리 알려버렸음을 지적하였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신문 기사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는 개시증거자료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공개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을 통해 제기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한 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세상에 알려진 정도를 가지고 사법에 심각하고 압박한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다. 재판 전에 그 사건이 세상에 크게 회자되었다는 것을 사법에 대한 중대하고 압박한 위험이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Provenzano v. State, 497 So. 2d 1177(Fla. 1986); Bundy v. State, 471 So. 2d 9(Fla. 1985)). 법원은, 다른 작은 카운티와는 달리, 힐스보로우 카운티는 큰 도시공동체로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심원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힐스보로우 카운티의 대도시적인 성격이 앞의 루이스 판결에서 제시된 3개의 엄격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입증 필요 없게 만든다. 일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건들이 대단한 관심과 토론의 대상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잠시 주목받다가 곧 잊혀졌을 것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의 불편부당성 심사는 예비심문(voir dire)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원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피고가 구하는 비공개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적 방법을 통해 보장할 수 있고, 또 보장하려 한다.

더 나아가, 법원은 심사를 위해 제출된 증거개시 자료들을 비밀심리 방식으로 심사하고, 루이스 판결의 기준을 그 자료들에 적용해 보고, 어떤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a substantial and immanent threat to a fair

trial) 때문에, 플로리다주법 제119.071(k)조에 따라 아래 제시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유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탐파경찰국 보고서 14쪽¹⁾의 강조된 부분.
 2.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26-31, 36, 41-42, 53, 58-59쪽의 강조된 부분. 416-421쪽은 26-31쪽의 복사본이고, 426쪽은 36쪽의, 430-431쪽은 41-42쪽의, 442쪽은 53쪽의, 447-448쪽은 58-59쪽의 각 복사본이다. 따라서, 26-31, 36, 41-42, 53, 58-59쪽에서 배제되어야 할 진술은, 각 복사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 한다.
 3. 탐파경찰국 보고서 62쪽의 강조된 부분.
 4.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95-97, 104, 106, 109, 112쪽의 강조된 부분.
 5.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관 보고서 128쪽의 강조된 부분.
 6.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130, 132-135쪽의 강조된 부분.
 7. 퀴니샤 맥밀란의 인터뷰 168-169, 186-187, 195쪽의 강조된 부분. 295-296쪽은 168-169쪽의 복사본이고, 313-314쪽은 186-187쪽의, 322쪽은 195쪽의 각 복사본이다. 따라서, 168-169, 186-187, 195쪽에서 배제되어야 할 진술은, 각 복사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 한다.
 8.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 녹취록의 시간 2:18:55에 뒤이어 바로 나오는 문장.
 9. 탐파경찰국 보고서 390쪽의 강조된 부분.
 10. 상당한 이유의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조서 392쪽의 마지막 단락.
- 마찬가지로, 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1) 신청서에서 피고인은 “개시증거 원본의 페이지 수(Master Discovery Page Numbers)”로 기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종 그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알아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확성을 위해 숫자 스탬프를 써서 일련의 번호를 다시 부여했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 신청서의 첨부자료 C는 1에서 392로 새로이 페이지 번호를 부여했고,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개시증거 자료는 393쪽에서 450쪽까지로 번호를 찍었다. 원래 목록상에 MDP 166-208로 기재되어 있던 자료는, 451-513으로 찍었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페이지 수는 바로 이렇게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숫자 스탬프로 새로 찍은 페이지수를 말한다.

그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때문이고, 둘째로는 피해자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공개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그 관련 자료들은 일반의 열람에 제공될 것이지만, 기록 관리인-이는 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이 될 것인데-의 점유를 떠날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법원은 법정 밖에서의 언론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발설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서 그들의 윤리적 의무와 플로리다주 변호사회 규칙 제4-3.6규칙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동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재판전 법정 밖에서의 언설 금지)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하는 자신의 언급이 재판절차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 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편견을 조장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말을 법정 밖에서 하여서는 안된다.

(b) (제3자의 언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언설을 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상담을 통한 조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법정 변호사는 자료조사자, 직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규칙에 따라 금지되는 법정 밖 언설에 도움을 주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변호사들에게는 이로써 여기 제시된 규칙4-3.6의 내용을 고지하는 바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여, 법정 밖에서 이 규칙의 문언과 취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언급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주(the State)도 역시, 주검찰청,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청,

플로리다주 법무부, 의약검사소,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를 보조하는 다른 법집행기관들을 포함하여, 주 소속 담당자들과 직원들에게 규칙4-3.6의 내용에 대해 주지시키고 훈계하여야 한다. 나중에라도 피고인이나 주 측에 의해 계속되는 법정 밖 언급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피고인이나 주가 믿게 된다면, 이 문제나 혹은 여기의 다른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증거개시 자료에 대한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은, 앞에 제시한 1번에서 10번까지 목록에 기재된 자료들의 범위에 한정하여 일반에의 공개로부터 잠정적으로 유보됨을 인용한다.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는 전부 다 공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다.

또한 이로써 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을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관련 자료들은 기록관리인-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의 점유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변호인들이 규칙4-3.6을 준수하고, 동 규칙의 문언과 정신을 위반하는 일체의 법정 밖 언급을 삼가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주(the State)도 마찬가지로 주검찰청,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청, 플로리다주 법무부, 의약검사소,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를 보조하는 다른 법집행기관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담당자들과 직원들에게 규칙4-3.6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한다.

이상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Media Law Reporter

■ 번역: 양태 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

공원 내 촬영사진의 상업적 이용 금지

1. 특정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을 사진 촬영하는 경우, 그 촬영과 사진의 사용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2. 공용토지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사진의 촬영 및 사용을 허락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에 있는 프로이센시대의 성과 정원을 관리하는 공공재단이 해당 성과 정원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사진촬영과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허락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2010년 12월 17일자 판결 - VZR 45/10 (항소법원: OLG Brandenburg)

관련조문: 민법 제1004조 제1항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와의 계약(Staatsvertrag, StV)을 통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 소재하는 프로이센시대의 성과 정원을 관리하는 공공재단이다. 이 재단은 양도받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적·문화적·기념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고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공공재단은 Sanssouci, Cecilienhof, Rheinsberg 공원 및 성, Charlottenburg 성, Grunewald Jagdschloss, Pfaueninsel 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 15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약 800 헥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과 정원 중 대부분이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피고는 주로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활동하는 사진작가이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사진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사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안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조각품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의 모습 등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본 사안에서 얻지 못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사진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 사진이 관리시설 외의 비공개 장소나 사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촬영된 경우 이러한 사진의 촬영, 사용 또는 공개적 배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사진의 수와 그에 따라 얻은 수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미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의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ZUM 2009 S. 430). 반면,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GRUR 2010 S. 927). 항소법원에 의해 허용된 상고심에서는 지방법원 판단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판단이유

I.

항소법원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었으나, 반면 특정 물건의 순수한 촬영은 이후 제기하는 사진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침해가 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유재산과 달리 원고는 자신의 주거권을 근거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접근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사진촬영의 허가

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내걸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세계적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익성은 오히려 다양한 표현을 요구하는 만큼 원고의 독점적인 관리권이 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TV화면을 녹화하기 위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여기에서는 그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상 그리고 원고에 의해 제시된 공원관리 규정에 따른 요구가 공원의 순수한 입장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

II.

상고신청은 허용된다. 상고이유가 정보공개청구와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확인에 대한 논의 없이 오로지 부작위청구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고심은 특별히 규정상 민사소송법 제551조 제3조 1문 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청구권의 병합이 요구된다(BGHZ 22 S. 272 [278]; BGH, NJW 1991 S. 1683 [1684]; MuenchKomm-ZPO/Wenzel, 3. Aufl., § 551 Rdn. 20). 항소법원이 부작위청구권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곧바로 이외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하였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청구권의 병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III.

상고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1. 항소법원에 의해 제기된 논거에 의하면 원고에 의해 주장된 부작위청구권은 부인될 수 없다. 원고가 관리하는 공원시설과 정원이 항소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속하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004조 제1항 2문에 의해, 원고의 관리 하에 있는 토지 내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이러한 사진들의 사용은 결국 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aa) 타인 토지 특히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사진 촬영하는 것이 해당 물건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bb) 토지소유권은 소유권자가 건립한 건축물, 그가 조성한 정원시설 그리고 공원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사진의 촬영과 사용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

b)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정원을 허가 없이 촬영한 사진과 그러한 사진의 사용이 곧바로 소유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GHZ 150 S. 6 [9 f.] = AfP 2002 S. 219). 건축물이나 정원이 그 존재하는 토지와 다른 위치에서 촬영되고 이러한 사진이 사용된 경우에는 침해로 볼 수 없다(BGH, AfP 1989 S. 660 = NJW 1989 S. 2251 [2252]; AfP 2003 S. 543 = NJW 2004 S. 594 [595]; OLG Duesseldorf, AfP 1991 S. 424 [425]; OLG Koeln, AfP 2003 S. 447 = NJW 2004 S. 619 f.; LG Freiburg, NJW-RR 1986 S. 400 [401]; LG Waldshut-Tiengen, AfP 2000 S. 101 = ZMR 2000 S. 522 [524]). 이러한 점을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59조의 병행가치에 근거를 두었다. 저작권법상의 예외는 소유권에 있어

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c)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이나 정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는 토지에서 촬영된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정원이 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용해 주고 또한 어떠한 조건 하에 이것이 허용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 판단은 민법 제903조에 의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도록 강요당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진촬영과 그러한 사진의 사용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지시킬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권한을 판례를 통해 계속해서 인정해 왔다(BGHZ 44 S. 288 [295]; AfP 1989 S. 660 = NJW 1989 S. 2251 [2252]; BGHZ 165 S. 62 [70] = AfP 2006 S. 56).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OLG Koeln, AfP 2003 S. 447 = NJW 2004 S. 619 [620]; LG Freiburg, NJW-RR 1986 S. 400 [401]; Erman/Hefermehr, BGB, 10. Aufl., §1004 Rdn. 13; RGRK/Pikart, BGB, 12. Aufl., §1004 Rdn. 144; Soergel/Muehl, BGB 12. Aufl., §1004 Rdn. 71; Prengel, Bildzitate, S. 214 ff.; KG, OLGE 20 S. 402 [403])과 이를 비판하는 견해(Soergel/Muench, BGB, 13. Aufl., §1004 Rdn. 62; Staudinger/Gursky, BGB, 2006, §1004 Rdn. 80; Dreier, in: Dreier/Schulze, UrhG, 3. Aufl., §59 Rdn. 14, S. 938; Kuebler, in: FS Baur 1981 S. 51 [61 f.]; Lehment, in: FS Raue, 2006, S. 515 [520 f.]; Loehr, WRP 1975 S. 523 [524]; Schmieder, NJW 1975 S. 1164; MuenchKomm-BGB/Medicus, 4. Aufl., §1004 Rdn. 32; Beater,

JZ 1998 S. 1101 [1106])가 있다.

d) 이러한 판례와 다른 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aa) 판례가 민법상의 소유권규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초상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과 무체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사진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독점적 권한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소유권 외에 발생하는 그 밖의 독립적인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사용권한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토지소유권 자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과실에는 민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성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수익과 마찬가지로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 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Prengel, Bildzitate, S. 217 f.). 토지의 위치와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사진들이 공공용지나 다른 토지가 아닌 오로지 토지소유자의 전용구역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러한 사진의 독점적 사용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bb) 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작품에 있어 그 복제 및 배포권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주어진다(저작권법 제16조·17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상호 연관성이 없고 서로 병존한다(BGHZ 129 S. 66 [70]). 따라서 소유권자의 권한은 그 행사에 있어 존재하는 저작권이 침해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받게 된다(BGHZ 33 S. 1 [15]; Prengel, Bildzitate, S. 205 f.). 처음부터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품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상의 관점에서 소유

권자에 의한 물건 외관의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이 존재한다.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문화재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cc) 원고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사진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귀속이 설사 저작권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원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러한 침해가 토지에 대한 손산(훼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훼손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는 경우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BGH, NJW 2003 S. 3702; NJW-RR 2006 S. 1378; OLG Dresden, NJW 2005 S. 1871).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허가 없이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이용함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데다 토지소유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제3자에 의한 사진의 사용을 토지소유권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이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e) 원고의 사용권이, 상고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공원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지 여부, 이러한 공원시설이 빈틈없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언급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진이 공개된 공간이나 토지 밖의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진의 사용을 저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공원시설은 항소법원이 당연히 인정한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아니다. 이러한 공원시설의 사실적 자유로운 출입은 원고의 결정에 근거하며, 원고는 해당시설을 기반으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와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aa) 원고에게 있어서 공익에 기초하는 재단이라는 상황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b) 원고는 공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Maunz/Duerig/Papier, GG, Art. 14 Rdn. 212; BVerfGE 98 S. 17 [47]). 그렇지만 원고가 공공의 임무를 인식하는 경우 동시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에서도 민법 제903조와 제1004조에 의해 공법상의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GHZ 33 S. 230 [231 f.]; BGHZ 153 S. 93 [98]; Palandt/Bassenge, BGB, 70. Aufl., §903 Rdn.1). 이러한 상황이 본 사안에도 존재한다. StV 제2조 제1항과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원고는 특히 자신에게 양도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문화재가 학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cc) 이러한 의무나 관련 법규정으로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원시설 내에서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반대의견으로는 Ernst, ZUM 2009 S. 434 f.).

dd)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가 다른 공용도로와 공원처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받고 활용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기념비와 문화재로 볼 수 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StV 제2조에서 이러한 목적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하에 허용될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ee) 국가계약에 있어 두 개의 주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대지를 결코 무제한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공공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들 주는 오히려 원고의 대지를 국가계약을 통해 설정된 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한편으로 해당 대지를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나 예술사적 그리고 문화재 보호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익 특히 학문적·교육적으로 문화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원고가 자신에 의해 관리하는 대지의 입장을 전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한다든지 특히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에게 양도된 문화재 관리를 StV 제2조 제1항과 약관 제1조에 의해 계획·준비하여 상이한 목표치에 맞게 부응하며 실효성있는 일치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방문자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참가를 허용해야 할 목적을 갖기보다는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원고가 일반인들에 의한 박물관으로서 문화재를 기념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정관 제2조 제2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f) 이러한 점들은 공원시설들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우선 문화재로서 보존 및 보호되어야 한다. StV 제2조 제2항 4문과 약관 제2조 제2항에서

는 원고가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의무 범위 내에서 휴양지로서의 이용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2조 제3항 1문에 의하면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의 이용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두 규정은 해당 대지에 입장할 수 있는 공공의 정신적인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2조 제3항 1문에서 유료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약관 제2조 제3항 2문에 의거하여 입장자율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StV 제2조 제6항에서는 성과 공공용지의 위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휴양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선 이와 같은 이용은 그 내용상 유적지 보존을 위한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StV 제2조 제6항 34문에 의하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g) 상업적 이용을 위한 사진촬영은 국가계약으로 공익에 부응하는 측면의 제한을 넘어선 특별한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고에 의해 수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GHZ 33 S. 230 [232]). 원고는 기본법 제3조의 관점에서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금을 징수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원고에게 영업상의 촬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aa) 항소법원이 언급한 바와 달리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문화재가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문화적·자연적 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의문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되었다 해서 해당 국가가 국민에게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의문 제4조에 의해 UNESCO가 해당 국가로 하여금 영토 내 존재하는 문화재를 파악하고 보호하도록 하면서 합의문 제19조에 의거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정과 존경심을 강화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건축물과 해당 시설의 사진 촬영을 위해 토지 내 입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권리를 이러한 사진의 이용에 제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bb) 피고의 견해와 달리 원고의 동의 없는 공원시설 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진작가로서 기본법 제5조의 보호를 받느냐는 의미가 없다(OLG Muenchen, OLGZ 1985 S. 466 [469] = AfP 1985 S. 222; OLG Frankfurt, OLGR 2009 S. 334 [335]).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객관적인 원칙규범으로서(BVerfGE 20 S. 162 [175]; 117 S. 244 [258 f.] = AfP 2007 S. 110) 공동사용의 한계를 넘어 공용물에 대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적절한 가격인하와 면제를 통해 공공의 알권리에 상응한 관점에서 고려하면 된다.

cc)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BGH, NJW 2007 S. 432, Rdn. 9). 그 외 필요한 재발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피고가 사진을 위임자에게 넘긴다든지 인터넷 사진포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1회의 위법한 사용만 가지고도 침해를 반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BGH, NJW 2004 S. 1035 [1036]).

e)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소유권자로서 유효한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 의해 주장된 손해배상의무의 확인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제될 수는 없다.

IV.

촬영된 대지에 대한 원고 소유권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그 밖의 전제조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이 바로 판단에 이를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그 외의 절차를 위해 재판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StV 제2조 제2항 1문에 의해 해당 토지가 원고에게 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료사용을 위해 양도되었다.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한 목록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입증을 위해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원고는 부작위의무가 미치는 모든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의 소유권 발생 근거가 되는 토지등기부 또는 편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소유권입증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 사용계약의 체결 및 내용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BGHZ 21 S. 319 [333]).

3. 부작위 청구가 사적 목적으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결여된다(ZPO 제253조 제2항 2호). 이러한 제한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수소법원(Prozessgericht)

의 판단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으며(BGHZ 156 S. 1 [8 f.] = AfP 2003 S. 545; BGHZ 158 S. 174 [186] = DB 2004 S. 1555), 이것은 집행법원(Vollstreckungsgericht)에게 위임된다. 어쨌든 사적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피고가 재판부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리 오로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점은 충분히 표명되었다.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치 않다.

4. 원고의 부작위청구는 내용상 인정된다.

a) 제소이유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맞춰 부작위판단은 오로지 원고의 토지 내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된 사진의 이용에만 적용된다.

b) 청구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무관한 사진의 이용과 1994년 8월 23일 원고의 시설에 대한 국가계약 체결 전 시점에 촬영된 사진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원고가 이전 소유권자의 권리 침해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된 바도 없으며 명확하지도 않다. 이 점에서 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국가계약체결에서부터 소유권의 실질적 양도시점까지 존재하는 모든 청구권을 본건의 재단에게 양도시켜야 하는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BGH, NJW 2009 S. 847 [848]).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포괄적인 양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5. 저작권침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정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청구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BGB 제242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배상을 위한 자신의 청구권의 존재 또는 범위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해자와 달리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BGHZ 95 S. 274 [278 f.]; NJW 2010 S. 2354 [2357 f.], Rdn. 43). 이러한 기본원칙은 물건의 외관 사진의 사용을 위한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이미 발생하고 또 장차 발생할 손해보상의 확인에 있어 갖는 원고의 이익은 단계소송(Stufenklage)의 가능성에 의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BGH, NJW 2003 S. 3274 [3275]; Thomas/Putzp/Reichold, ZPO, 31. Aufl., §256 Rdn. 14). 이에 필요한 피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원고의 공내 정원과 정원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의 관점에서 이를 방문하는 자의 사용권 범위가 지금까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출처: AfP 02-2011, 158-162면

■ 번역: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1]

범죄 관계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가 그 이야기를 기사에 실기 위해 범죄 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 Donna Fleming

언론사: Pick Me Up

인용된 조항: 1조 정확성 (Accuracy), 5조 슬픔과 충격에 대한 자극 (Intrusion into grief and shock), 16조 기사정보를 위한 범죄관계자 매수 (Payment to criminals)

개요

신청인 Donna Fleming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 (PCC)에 2010년 7월 8일 Pick Me Up이 게재한 보도 중 “Forensics tore my flat apart”라는 제목의 보도가 윤리강령 16조 기사정보를 위한 범죄 관계인 매수 (payment to criminals)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청내용

해당 기사는 Scott Riley가 신청인의 어머니를 살해하던 날 밤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Emma Cooke를 통해서 기사화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Emma

Cooke와 Scott Riley는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이라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기사에서 신청인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언론사와 Emma Cooke가 얻을 경제적 이익외의 공익적인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Emma Cooke을 윤리강령 16조의 범위에 들어가는 관계인(associate)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지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경우에는 관계인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Emma Cooke 역시 피해자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판단

표현의 자유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관계 정도 여부를 불문하고 개개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잡지사나 신문사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인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신문사나 잡지사가 범죄 관계자에게 정보를 위해 사례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윤리강령 16조 (Payment to criminals)는 자백하거나 죄가 확정된 범죄자 또는 관계인(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사례를 지급하여 특정한 범죄를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PCC는 Cooke과 Riley의 관계에서 일방의 당사자

를 관계자라 할 만한 사이였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는 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바로 직후의 Riley와 Cooke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의 견해로는 언론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용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Cooke는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얘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사가 그 경험을 기사화하기 위해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영국 사례 2]

병원의 병동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 Malcolm Stamp

언론사: Essex Chronicle

인용된 조항 : 8조 병원에 관한, 병원에서 작성된 보도 (hospital)

개요

Mid Essex 병원의 경영자인 Malcom Stamp는 2011년 2월 3일 Essex Chronicle이 ‘범죄의 희생자, 의식불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기사는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황

의 진전에 대해서 보도했다. 이 보도는 병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기사는 피해자 부모님의 직장을 찾아간 적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기자가 병원이나 병원의 직원에게 자신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 그리고 병원 방문 목적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원측 규정에 따르면 병약한 환자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병원의 홍보팀을 통해야 하며, 사전 협의를 거쳐 보도되어야 한다.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기자에 대해 물어봤으나,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필기도구나 녹음기 등을 보지 못했다). 또한, 병동의 선임간호사는 피해자가 기자에게 말한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병원의 직원이 그 기사에 대해서 알렸을 때 크게 화를 냈었다고 진술했다.

언론사의 주장

언론사는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술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폐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 협조적이었고, 기사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초대되어 피해자 병문안을 간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환자가 취재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을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간호사에게도 자신의 소속과 기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의문이 드는 점은 병원 직원인 한 진술이다. 그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카메라(사용하지 않았다)와 필기도구를 들고 가는 것을 간호사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명의 간호사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함께 있었고, 다

른 간호사 한 명은 기사가 어떤 형식으로 보도되어야 하는지 조언까지 해주었다. 이런 정황들은 언론사가 병원의 홍보팀과 협력을 통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판단

위원회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았다. 신청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뷰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이더라도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윤리강령 8조는 “기자가 병원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장소는 뇌졸중 전문병동으로 환자가 간섭과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다. 비록, 위원회 역시 병원 방문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에 이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자의 행동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에 부정의 여지가 없다.

윤리강령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사는 환자가 치료를 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애매 모호한 점들은 없앨 수 있었고, 책임자에게 촬영이나 인터뷰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고 취재를 하러 갔다면 이러한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취재 대상의 건강이 위급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사가 신분을 병원에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기자가 병원의 직원과 대화했던 장소는 사적인 공간이었다.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기 전에 벌써 허락을 받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조차 행하지 않았던 기자가 병원의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명확히 밝혔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는 이 기사를 얻게 된 경로마저 정당화하기에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다.

[호주 사례]

재판의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피의자의 직장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1497

신청인: McGregor

언론사: Geelong Adv

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개요

2011년 6월 1일 호주 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는 2010년 12월 10일 Geelong Advertiser가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McGregor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하였다.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신청인의 주장

McGregor는 그의 직장, 성을 포함한 이름, 나이,

그리고 주소뿐만 아니라 그가 레게머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그가 의학적 치료와 금전적 이익이 관계된 민감한 결정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사적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태프들의 이름이 제3자에게 밝혀지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그 기사로 인하여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McGregor는 “그가 주먹을 들어 경관을 향해 계속 휘둘렀고, 경관은 그를 향해 한 번의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검찰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주장

언론사는 법정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그 정확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등이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죄판결에 대한 보도 시,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보도하였을 때 피고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에 신청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명확히 게재했다. 또, 레게머리(dreadlocked)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신청인을 경멸적으로 비유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결정 이유

평의회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확인하였는데, 목격자 중 한 사람이 기사에 인용된 상황과 흡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검사에 의해 작성된 조서에서도 흡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평의회는 유죄판결 기사에서 피의자의 직장을 밝힌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고용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

는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평의회는 신청인의 머리스타일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 역시 불공정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기사 내의 인용부분 역시 진술이 법정에서 문서로 제출되었거나 언급된 적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뉴질랜드 사례]

과거 해당 언론사에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실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사 내에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 반론보도를 해야한다.

사건번호 : 2188

신청인 : John Bates

언론사 : Sunday Star-Times

개요

John Bates는 Sunday Star-Times가 지난 4월 24일에 게재한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이 공평성, 정확성,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2명의 위원은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

사건 배경

기사는 “나쁜 땅 뉴질랜드; 범죄자에 딱 맞는 영토 (Badlands NZ; A Land Fit for Criminals)”라는 제목을 가진 책의 개요를 서술했다. 이 책의 저자인 David Fraser는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범죄자에게만 이로운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다.

첫 페이지에 나간 기사에는 저자의 견해가 요약되

어 있었고, 몇 차례의 인용과 통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인 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범죄를 촉진하는 법 시스템”이란 소재목이 두꺼운 서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신청인의 의견

Bates는 2011년 5월 2일 이메일을 보내 신문에 항의했지만, 5월 23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저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학자이지만, 기사에 언급된 통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기록과 보고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통계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이다.

특히 ‘법 시스템이 범죄를 촉진시킨다’라는 제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분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그 책에 관한 기사는 Sensible Sentencing Trust(더 높은 형량을 판결하게 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로비그룹)를 위한 선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는 저자의 의견이 사실인 것과 같이 기술하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독자로서는 저자에 대한 의견이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사 주장

편집자는 기사가 언론사의 견해가 아니라 저자의 견해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또 다른 전문가인 Kim Workman의 의견을 실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Workman의 의견은 정기적으로 기사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David Fraser는 국가범죄정보원의 분석

가이며, 영국 법원의 보호감찰부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법학 분야의 명성을 쌓아왔으므로, 그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과 결정

언론평의회는 신청인이 제기했던 불만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는다. 부제목은 그 책의 표지 바로 아래에 실려 있으므로 당연히 저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제목은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시스템이 범죄를 촉진시킨다’라는 문구에 표시된 인용 표시는 이것이 언론사의 의견이 아니라 저자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평의회 규정을 따르자면, 그 기사가 논평인지 의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사의 일부는 책에 대한 서평으로, 다른 일부는 저자의 의견이나 책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 독자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사가 단지 저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다. 광범위한 인용부호 사용으로 독자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의 저자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저명한 이의 의견을 실어 보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에 따라 평의회는 반론의 내용이 없어 독자들이 왜곡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한다.

저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짧게 만들어진 책의 소개에 불과할지라도 독자들에게 저자의 명성이나 통계, 견해에 대해서 균형성 있는 비판을 제시하여야 했다.

언론사가 저자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실을 때에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평의회는 언론사측에서 Kim Workman의 의견을 과거 수차례 실었었다 하더라도, 평의회 원칙에 대한 규정 중 “기사에서 충돌하는 의견이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같이 실려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평의회는 해당 기사가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용한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권현영 (2011. 9. 20).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ISP의 책임범위 및 한계 : 최근 소위 섯다운 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김기태 (2011. 8. 17). 미디어교육으로서의 NIE 활성화 방안. 한국미디어교육학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연구분과 공동주최, '제15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 미디어교육으로서의 NIE 활성화를 위한 이론과 현장의 만남' 세미나 발제문.
- 김도훈 (2011. 9. 2).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통신학회 공동주최, '스마트TV: 기술, 미디어 및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 김연식 (2011). 방송저널리스트의 PD저널리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69~96.
- 김영주 (2011. 7. 19). 한국 신문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 뉴스 미디어 지평의 확대 혹은 축소.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 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김정탁 (2011. 8. 25). 현행 피해구제제도문의 크기 · 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정기세미나 발제문.
- 김창숙 · 김용주 (2011). 진보적 성향의 판결에 대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뉴스 구성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21호, 165~205.
- 김철우 (2011. 9. 6). 군 비상사태 시 취재 및 보도 발전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토론회 발제문.
- 김태현 (2011. 8. 25). 통계 데이터로 보는 소셜 네트워크 이슈 흐름. 미디어오늘주최,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활용 전략' 컨퍼런스 발제문.
- 김형일 (2011. 7. 22). 한국 방송의 현주소 : 비판적 방송저널리즘의 위기와 전망. 한국PD연합회 · 한국 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 '한국방송의 현주소' 세미나 발제문.
- 류정호 · 이동훈 (2011). 소셜 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
- 마동훈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의 형성과 성격: 1962년~1964년의 국민, 공민,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문재완 (2011. 9. 2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 세미나 발제문.
- 박경신 (2011. 9. 20). 인격과 명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박선희 (2011. 7. 19). 한국정치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정치 역설.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Ⅱ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박중순 (2011. 8. 25). 손해배상소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정기세미나 발제문.
- 박중현 (2011. 9. 20).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섯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박준석 (20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창작과 권리』, 통권 63호, 106~133.
- 박창희 (2011. 9. 2). 스마트TV의 수용이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통신학회 공동주최, ‘스마트TV : 기술, 미디어 및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 백미숙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교육, 계몽적 역할의 역사적 구성과 내용규제: 방송가요, 방송언어,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1963~1987.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백선기 · 이옥기 (2011. 9. 17).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 분석과 보도양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주최, ‘제17회 한 · 일 국제심포지엄 - 한일 양국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안’ 발제문.
- 신영호 (201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52권 3호, 137~165.
- 양재규 (2011. 7). 법을 알고 기사쓰기 72 - 범죄 발생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7호, 94~97.
- 양재규 (2011. 8). 법을 알고 기사쓰기 73 - 주인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저 침입에 해당. 『신문과 방송』, 통권 488호, 86~89.
- 양재규 (2011. 9). 법을 알고 기사쓰기 - 사진 촬영 때 주최 측 말보다 당사자 동의의 더 중요. 『신문과 방송』, 통권 489호, 82~85.
- 원용진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50년과 대중문화: 텔레비전과 대중음악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Ⅲ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윤주성 · 이오현 (2011). 지방정부의 지역언론 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58~381.
- 윤지희 · 이건호 (2011). 한국 5개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7~53.
- 이연 · 송중현 (2011. 9. 17). 한국에 있어서 재난방송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공영방송, 스마트폰, 인터넷, DMB 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주최, '제17회 한 · 일 국제심포지엄 - 한일 양국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안' 발제문.
- 이영주 (2011. 8. 30) 자율심의 체제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주최, '광고의 자유와 광고심의' 세미나 발제문.
-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 『언론과 사회』, 19권 2호, 2~48.
- 임영호 · 김은미 (2011. 7. 19).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임정수 (2011. 7. 19).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 진화와 콘텐츠 생산양식.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임종섭 (2011). 온라인 뉴스 홈페이지 머리글 기사의 차별화와 표준화 분석.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82~102.
- 장철준 (2011. 8. 30).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법학회주최, '광고의 자유와 광고심의' 세미나 발제문.
- 조소영 (2011. 9. 20).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최이숙 (2011. 8. 30). TV 방송 50년의 자화상: 한국 TV 저널리즘의 변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I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최윤정 · 이종혁 (2011).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기사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4~75.
- 최진순 (2011. 8. 25). 콘텐츠 플랫폼의 분화와 주류 언론의 위기. 미디어오늘주최,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 활용 전략' 컨퍼런스 발제문.
- 한진만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편성 추이와 특성.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I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

